

파라소시스템

	시 방 서	문 서 번 호	KDCE-A-4111
		제·개정일자	2019. 03. 19
	파라소 시스템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12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상 및 발코니 조경, 지하주차장 상부조경, 실내조경 및 기타 인공구조물 조성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탄소발자국 인증 받은 인공 토양 퍼라이트 제품으로 식재공사 시, 필요한 재료의 품질규격,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 (1) KS F 2322 : 2015 흙의 투수시험방법
- (2) KS F 3701 : 2006 펄라이트
- (3) KS I ISO 10390 : 2005 토양의 질·pH 측정
- (4) KS L 3316 : 2014 내화 벽돌 및 내화 모르타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 (5) KS K 0210-1 : 2015,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 섬유 혼용률
- (6) KS K ISO 9864 : 2007 지오텍스텍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 (7) KS K 0743 : 2016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 (8) KS K ISO 11058 : 201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2)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 (1) ASTM D 6878 : 2013 –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oplastic Polyolefin Based Sheet Roofing
- (2) ASTM D 1238-13 :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Melt Flow Rates of Thermoplastics by Extrusion Plastometer
- (3) ASTM D 792-13 : 2000 – Standard Test Methods for Density and Specific Gravity (Relative Density) of Plastics by Displacement
- (4) ASTM D 4833 :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Index Puncture Resistance of Geomembranes and Related Products

3) 농업진흥청

(1) 농촌진흥청 고시 : 『비료의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제 10 조 1 을 준용한다.

(단, 다짐 방법은 (주)경동원 사내 시험방법에 준한다.)

4) 관리 인증

(1) 우수재활용 제품 규격 (GR)-GR M 3079 : 2016 : 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2) 환경성적표지인증(탄소발자국) - 탄소발자국인증(파라소 육성용 인공토양, 파라소 배수용 인공토양)

(3) 환경표지인증(자원순환성 향상) - 투수시트

1.3 용어의 정의

1) 퍼라이트

마그마가 지표의 호수나 바다로 흘러 들어 급속히 냉각되면서 내부에 휘발성분이 농집되어 생성된 비정질의 광물을 적절한 입도로 분쇄하여 1100℃ 이상의 고온에서 급속 가열~~중~~창시킨 조경용 순수무기소재로서, 탁월한 경량~~화~~단열 효과를 갖추고 있으며, 무독~~무균~~취 특성까지 겸비한 최상의 조경, 농원예용 소재이다.

2) 투수시트

인공지반 녹화 시, 안정적인 식재기반으로 지속되도록 토양의 유실과 배수구의 눈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부직포를 말한다

3) Neo 투수펫

배수기능과 담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높은 하중 지지력과 용이한 시공성을 갖춘 고강도 조경용 플라스틱 배수판을 말한다.

4) 환경성적표지인증(탄소발자국)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5)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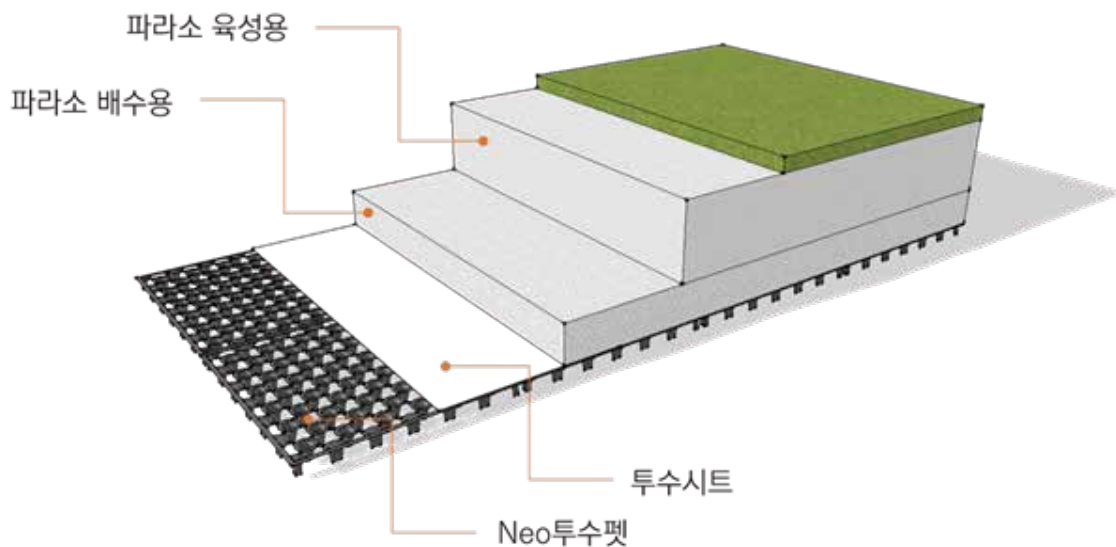
자원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 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 인증 제도이다.

6) 환경표지 인증(자원순환성향상)

ISO 규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환경 관련 정보를 객관성 있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환경 등급 제도. 제품의 전과정(원료 물질 채취 및 제조 단계-제품 제조 단계-사용 단계-폐기 단계)에서 투입물과 배출물에 의한 환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관련 환경 영향 범주별로 분류,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제 3 유형의 환경 선언(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제도다.

1.4 시스템 설명

퍼라이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멀칭재(필요시), 육성용 인공토양, 배수용 인공토양 그리고 배수시스템 및 방근시트(필요시)로 구성되며 건전한 식물생육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한 초경량 인공지반 녹화시스템이어야 한다.



1.5 품질확인 (Quality assurance)

- 1) 지방서에 지정한 제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만족한 제조회사로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회사로 한다.
- 2) 지정된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생산하는 업체로서 ISO 품질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서(탄소발자국 인증)를 받은 제품으로 풍부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증명을 첨부한다.
- 3)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연간 50 만 M3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로 한다.
- 4) 투수펫은 GR (Good Recycled Product)인증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현장 야적 시 습기, 함수, 직사 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보관 부주의 시 하기와 같은 품질 및 시공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보관

(1) 직접적인 눈, 비의 접촉에 의한 영향

가. 파라소

흡수에 의한 포장 중량 증가로 인한 포장재 파포 및 운반끈이 끊어질 수도 있다. (제품 비산 및 안전 위험)

2) 운반 및 취급

(1)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대용량 bag 은 운송 중 하중이 편중(偏重)되지 않도록 하며, 100L/bag 은 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주의토록 한다.

(3) 취급 전 물질안전보건 (MSDS) 를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구(보안경,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7 진행 계획 (Sequencing)

1)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인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이 방치되어 수목식재가 곤란하거나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 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는 건축공사에서 시행하여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 조경공사에서 인계받아 식재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2) 조경공사 지역 내 토공 사전 정지

(1) 토목공사 시행자는 기초공사 완료시점에 지하구조물 설치 및 토공정리를 완료하여 1 차 조경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건축 비계철거와 동시에 2 차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공정계획표에 따라 시행하여 2 차 조경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해 잡물제거, 성토, 더둑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 완료 전에 수목식재공사 착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경공사 수급인은 토목공사 시행자와 서로 확인한 뒤에 인계받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조성

지하주차장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기 위한 플랜터 설치, 배수층 조성, 객토 등의 시공 한계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설치와 놀이터 및 휴게소 등 식재공사 이외의 토공은 건축공사에서 시행한다.

(2) 토목포장과 인접하는 플랜터의 지하매설부는 토목공사에서, 노출부분은 조경공사에서 시행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인접 플랜터는 토목공사에서 시행한 다음 플랜터 안의 배수층과 지반용 부직포(투수시트) 깔기 및 객토는 조경공사에서 시행한다.

2. 재료

2.1 구성품

1) 파라소

(1) 구성

탄소발자국 인증된 파라소는 KS F 3701 퍼라이트 규격에 적합한 인공토양 (파라소) 으로서, 흙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성

① 파라소 육성용

항 목	물 성		검사 방법
투수계수	200mmhour(약 0.0055cm/초이상)		KS F 2322: 2015
단위용적중량	0.090 ± 0.020kg/ℓ		KS F 3701: 2006
포화흡수시중량	600(kg/m³)이하		『비료의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제 10 조 1 항(농촌진흥청 고시)
입도분포 (통과 vol%)	2.36mm	80~100	KS F 3701: 2006
	1.18mm	55~75	
	0.60mm	20~45	
	0.30mm	10~30	
	0.15mm	20 이하	

② 파라소 배수용

항 목	물 성		검사 방법
투수계수	1,000mm/hour(약 0.027cm/초이상)		KS F 2322 : 2015
단위용적중량	0.140 ± 0.020kg/ℓ		KS F 3701 : 2006
포화흡수시중량	500(kg/m³)이하		『비료의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제 10 조 1 항(농촌진흥청 고시)
입도분포 (통과 vol%)	2.36mm	60~80	KS F 3701 : 2006
	1.18mm	10~30	
	0.60mm	10 이하	

(3) 용량

파라소의 용량은 KS F 3701(떠라이트) 의 단위용적질량 측정 방법에 준한 기준으로 측량한다.

3) 투수시트

(1) 구성

파라소의 유실 방지 및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투수시트는 200g/m² 이상의 부직포로 투수계수 1,000mm/hour 이상이어야 한다.

(1) 물성

항 목		물 성	검사 방법
재질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KS K 0210-1 :2015
중량		200g/m ² 이상	KS K ISO 9864 : 2007
투수계수		1000mm/hour 이상	KS K ISO 11058 : 2011
인장강도	길이	25kgf 이상	KS K 0743 : 2016
	폭	25kgf 이상	KS K 0743 : 2016
인장신도	길이	50%이상	KS K 0743 : 2016
	폭	50%이상	KS K 0743 : 2016

4) Neo 투수펫

(1) 용도

토양의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제품으로 **GR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물성

검사 항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낙구 충격 시험	깨짐, 균열 및 그 밖의 사용상 해로움이 없을 것	GR M 3079 : 2016
압축 하중	50 KN 이상 (시편 500*500mm 기준)	
비카트 연화 온도	90 ℃ 이상	
냉열 반복 시험	부품림, 갈라짐, 뒤틀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0.5 % 이하	
회분 시험 (%)	최소값 ≥ 평균값 × 0.9 최대값 ≤ 평균값 × 1.1	
개폐율	40 % 이상	

2.2 자재 품질관리

- 1) 공장 자체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 2) 현장품질관리시험은 관련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제품의 물성은 지정된 요구성능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 하중, 이동 하중, 동 하중, 수목 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2 작업 준비

3.2.1 안전 사항

- 1) 인공토양 시공 시, 모든 작업자는 먼지, 분진 등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 안면보호구 및 이외 적절한 보호장구 및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2) 퍼라이트 인공토양은 인체에 무해하나, 체질에 따라 피부에 노출 시 가려움, 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복 착용을 권고하며, 가려움, 피부 장애 발생 시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갔을 시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 하여야 하며, 이물감이 느낄 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 3) 사용자는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술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정확한 작업을 유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퍼라이트 인공 토양 작업 전, MSDS를 숙지 하도록 한다.
- 4) 현장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안전에 관하여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지침 및 교육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5)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 장비를 작업장 주위에 배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사전 처리

1) 바닥정리

(1) 방근시트 사용시-(별도 시방서 참조)

(2) 요철 등이 있어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면고르기를 통하여 바닥면이 평탄하도록 한다.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 시공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모르타르 또는 에폭시수지 등을 이용하여 균열부위를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선공정 시공업체 또는 감리, 감독관에게 문의한 후 시공한다.

(4)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인공지반조성

(1) 인공지반 조성 시 플랜터는 지정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바닥면은 물론 측벽 토사층 상단 10cm까지 방수 처리 하되, 방수 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식재층 바닥과 벽면에는 식물 뿌리의 침투에 의하여 방수층 및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3) 식재층 바닥은 설계도에 명시된 투수펫을 깔며, 그 위에 투수시트 혹은 투수형 방근시트를 깔아 토양유실이나 배수기능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 상부 등 비교적 넓은 면적의 식재지에는 배수층을 형성하고, 유공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며, 배수 점검구를 두도록 한다.

(5) 인력관수의 경우 급수전을 설치하고, 자동 관수 설비를 갖춘 경우 관수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6) 인공지반에 공사 전 조성된 플랜트 박스 및 인공지반이 조성된 바닥면은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3.3 시공기준

1) 식재기반층 조성

(1) 배수층 조성 (방근층 조성 시에는 별도 시방서 참조)

가. 식재층 바닥면에 투수펫을 설계도면에 명기된 대로 설치하되, 투수펫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플랜트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에 접속하며 연결고리를 결속하여 사용한다.

나. 토양의 유실방지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시트를 이용하여 기 설치된 투수펫 및 식재 기반에 이음매가 30cm 정도 겹치도록 한다 특히 플랜트박스 측벽에 30cm 이상 치켜 올려 토양의 유실을 완전히 차단한다.

(2) 파라소 포설

가. 설치된 투수시트 및 투수형 방근시트 위에 배수용 파라소를 포설하며 동시에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고 면고르기를 실시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 후 육성용 파라소를 포설하되 살수와 다짐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도면에 명기된 토심을 확보한다.

다. 파라소 포설 시 일체의 타재료(일반토양 등)의 혼합을 금하며 육성용과 배수용의 분리시공(육성용과 배수용 토양의 혼합 후 포설 금지)을 철저히 준수한다.

라. 도면에 토심에 관한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준하여 토심을 확보한다.

구분	토심	근거
초화류 및 지피식물	10cm 이상	식재 등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46 호, 조경기준, 2014.3.5)
소관목	20cm 이상	
대관목	30cm 이상	
교목	60cm 이상	

(3) 다짐작업

가. 파라소 포설이 완료된 후 토양의 다짐상태를 점검한다.

(4) 특기사항

가. 파라소 포설 후 곧바로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양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양(짚, 거적, 비닐등 이용)을 반드시 실시한다.

나. 파라소 포설 시 바람의 영향으로 작업자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 파라소 미립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안전장구 등을 착용 후 시공한다.

다. 파라소의 제품 특성 상 시공과정에서 물량의 할증이 발생하므로 물량 산출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목식재

(1) 수목

가. 각종 조경 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철저히 한다.

나. 본 공사에 심을 나무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심을 나무는 각기의 고유 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24 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수목이식

가. 일반 조경공사 특기시방에 준해 식재 한다.

나. 단, 토심이 뿌리분 보다 낮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분 주변을 마운딩 처리한다.

다. 식재 후 수목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관수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교목주위나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소관목 주변을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라. 추후 장기 침하를 고려하여 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토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한다.

마. 지주목의 설치는 가지주목을 설치하며 수목활착 후 제거한다.

(3) 표토처리

가. 식재 완료 후 표토의 처리는 조경토, 마사토, 바크등의 멀칭재를 상부에 피복 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비산을 방지한다, 단, 잔디나 지피류로 피복할 시에는 별도의 표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조경토나 마사토를 상부에 포설한 후 잔디나 초화류를 식재할 수도 있다.

나. 피복 처리 후 충분히 관수한다.

다. 물이 고이지 않게 지면을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무리 다짐작업을 한 뒤 주변을 정리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 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3.5 시공품질관리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변경이 있을 시는 감리자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6 제조업체의 현장지원

시공 전, 자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진행 여부에 대하여, 문의는 (주)경동원 세라텍 사업부 서울 (02-559-8181), 부산 (051-512-8181), 광주 (062-526-8181) 으로 문의한다.

3.7 현장 뒷정리

재료의 포장물, 남은 재료, 기타 쓰레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 칙

본 시방서는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1 차 개정 : 2017.09.09

2 차 개정 : 2018.05.18

3 차 개정 : 2018.10.30

4 차 개정 : 2019.03.19

투수방근시트

	시 방 서	문 서 번 호	KDCE-A-4111
		제·개정일자	2019. 03. 19
	투수방근시트 표준 시방서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상 및 발코니, 지하주차장 상부, 실내 및 기타 인공구조물 상부에 토양층을 조성한 후 식재공사를 할 때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하여 구조물의 보호 및 영구적인 식재 기반층을 조성하기 위한 방근시트의 품질 규격, 작업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방근시트란 인공지반 녹화 시 식물 뿌리 및 외부 요인에 의하여 옥상 방수층 및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반녹화시스템 하부에 설치하는 시트이다

1.3.2. 방근시트 연결 Tape란 방근시트 접합부위의 기밀성 유지를 통해 식물 뿌리, 수분, 공기의 침투를 방지해주고 방근시트 간의 연결을 더욱 견고히 해주는 Tape를 말한다.

1.3 시스템 설명

식물의 뿌리와 접하는 면에 설치하여 뿌리가 인공구조물에 접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시트와 시트간의 연결 및 기밀성을 유지해주는 연결Tape로 구성되어야 한다.

1.4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감리원 또는 감독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4.1 제품자료 : 카달로그를 제출한다

1.4.2 시공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4.3 견본(SAMPLE) :제출견본은 판매사에서 제출한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 시험성적서(품질검사 대행기관)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1.5.2 현장 야적 시 습기에 노출되어 제품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사용 시 주의사항

1.6.1 규정된 재료 이외 타자재의 혼용을 금한다.

1.6.2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한다.

2. 재료

2.1 재료명

재료명	규격	용도
투수방근시트	W2.1m*L50m	투수 및 방근용 시트
양면 점착테이프	W50mm*L20m	방근시트 연결테이프, 방근시트 고정

2.2 구성품

2.2.1 투수방근시트

투수방근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로 견고히 제작되어, 식물의 뿌리는 관통할 수 없으나 섬유조직의 미세한 기공을 통하여, 물과 양분은 투과할 수 있는 투수성을 가지는 재질이어야 한다.

검사 순서	검사 항목		검사 기준
1	외관		찢어지거나, 오염된 곳이 없을 것
2	재질		폴리에스테르
3	두께 (mm)		0.4 이상
4	질량 (g/m ²)		150 이상
5	투수계수 (mm/hour)		200mm/hour
6	인장강도 (N)	길이	250 이상
		폭	200 이상
7	인장신도 (%)	길이	10 이상
		폭	10 이상

2.2.2 양면 점착테이프

방근시트 간, 방근시트와 시공면 간 접착부분 기밀성 유지 및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강해주는 Tape로서 항상 물에 접촉하는 공간이기에 반드시 방수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공장 자체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3.2 현장 품질관리 시험은 관련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제품의 물성은 지정된 요구성능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 전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범위와 위치를 잘 확인하고, 설치될 장소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투수형 방근시트 및 점착테이프 시공

- (1) 옥상 및 인공지반조경의 배수층(배수판, 채석) 상부에 설치할 때 방근시트가 구겨지거나, 뒤틀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또한 옥상녹화시스템 하부 및 인공지반 슬라브 상부에 설치할 때는 타 공정에 의한 찢어짐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 (2) 방근시트 설치 시 이음부가 발생할 경우, 이음부는 5cm 이상 겹쳐지도록 하여 방근시트 전용 양면 점착 테이프로 이격 또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특히, 인공지반의 채석 포설면 상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점착방법에 더욱 유의하도록 한다.
- (3) 설치 및 점착테이프 접착이 끝나면, 설계도면과 시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경계면의 주변으로 돌출되거나 끝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절단 등을 통한 깔끔한 시공면을 조성하여 주도록 한다.

3.3.2 시공시 유의사항

- (1) 시공 시에 방근시트의 접착이 미흡하여 들뜸이 발생할 경우 점착테이프를 보강하여 시트가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채석 상부면이 울퉁 불퉁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접착 시에 접착부 하부에 평탄한 재료의 판등을 설치하여 기밀한 접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 (3) 시트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시 훼손부위에 방근시트를 덧대어 접착하도록 한다.
- (4) 시트 설치 후 복토작업 시 진입 부부터 복토하여 방근시트의 훼손을 방지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 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고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리자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5 제조업자의 현장지원

3.5.1 제조업자는 현장의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성심 성의껏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재료의 포장물, 이형지, 남은재료, 기타 쓰레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7 문의

3.7.1 문의사항은 (주)경동원 세라텍사업부 GR팀 02-559-8181으로 문의한다.

엑스루트

	시 방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일자	2019. 10. 17
	엑스루트 표준 시방서	개 정 번 호	
		폐 이 지	1/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상 및 발코니, 지하주차장 상부, 실내 및 기타 인공구조물 상부에 토양층을 조성한 후 식재공사를 할 때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하여 구조물의 보호 및 영구적인 식재 기반층을 조성하기 위한 방근시트의 품질 규격, 작업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방근시트란 인공지반 녹화 시 식물 뿌리 및 외부 요인에 의하여 옥상 방수층 및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반녹화시스템 하부에 설치하는 시트이다

1.3.2. 방근시트 연결 Tape 란 방근시트 접합부위의 기밀성 유지를 통해 식물 뿌리, 수분, 공기의 침투를 방지해주고 방근시트 간의 연결을 더욱 견고히 해주는 Tape 를 말한다.

1.3 시스템 설명

식물의 뿌리와 접하는 면에 설치하여 뿌리가 인공구조물에 접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시트와 시트간의 연결 및 기밀성을 유지해주는 연결 Tape 로 구성되어야 한다.

1.4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감리원 또는 감독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4.1 제품자료 : 카달로그를 제출한다.

1.4.2 시공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4.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제조사에서 제출한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 시험성적서(품질검사 대행기관)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1.5.2 현장 야적 시 습기에 노출되어 제품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사용 시 주의사항

1.6.1 규정된 재료 이외 타자재의 혼용을 금한다.

1.6.2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한다.

2. 재료

2.1 재료명

재료명	규격	용도
엑스루트	1M * 15M/Roll	방근용 시트
엑스루트 Tape	100mm * 50M	시트 접합

2.2 구성품

2.2.1 엑스루트

1) 구성

PET Film → 알루미늄 금속 Film → PVC Sheet 순으로 구성된 유/무기 복합 시트

① PET Film : 최상부면으로서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하며 작업중의 충격에 의한 스크래치, 제품의 파손을 방지, 내부의 알루미늄 시트 보호, 알칼리와 산에 의한 부식 방지 및 장기적으로 내구성 확보

② 알루미늄 금속 Film : 금속 재질로서 반 영구적인 방근시트 층 조성.

③ PVC Sheet : 상부 저항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서 방근시트의 파손을 방지함.

검사 순서	검사 항목		검사 항목
1	외관		찢어지거나, 오염된 곳이 없을 것
2	재질(표면)		폴리에스터
3	질량(kg/m ²)		1.0 ± 0.1
4	두께 (mm)		0.7 ± 0.1
5	인장강도(N)	길이	800 N 이상
		폭	800 N 이상
6	신도(%)	길이	80% 이하
		폭	80% 이하

2.2.2 엑스루트 연결 Tape (100mm * 50M/롤)

방근시트 간, 방근시트와 시공면 간 접촉부분 기밀성 유지 및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강해주는 Tape로서 자체적인 방근기능 및 접착성, 신축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공장 자체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3.2 현장 품질관리 시험은 관련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제품의 물성은 지정된 요구 성능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부위는 시멘트, 흙, 목재 등 접착재의 접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방근시트가 바닥, 벽면에 접착할 수 있도록 건조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요철 등이 있어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면고르기를 통하여 바닥면이 평탄하도록 한다.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2.2 시공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모르타르 또는 에폭시수지 등을 이용하여 균열부위를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선공정 시공업체 또는 감리, 감독관에게 문의한 후 시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방근시트(엑스루트) 시공

1) 방근시트(엑스루트)는 5cm 이상 겹쳐서 시공하고 연결부위 및 바닥면과의 접착면이 들뜨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닥면의 경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 시공한다.

2) 바닥면이나 연결부위에서의 들뜬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3.3.2 방근시트(엑스루트) 연결 Tape의 시공

1) 방근시트(엑스루트)의 겹침부위를 따라 연결테이프를 붙여준다.

2) 방근시트(엑스루트) 끝단을 연결테이프를 붙여 마감 처리한다.

3) 시공이 완료되면 연결부위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연결이 확실치 않은 부위는 연결테이프를 덧대어 시공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 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고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리자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5 제조업자의 현장지원

제조업자는 현장의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성심 성의껏 한다.

3.6 현장 뒷정리

재료의 포장물, 이형지, 남은재료, 기타 쓰레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7 문의

문의사항은 (주)경동원 세라텍사업부 GR팀 02-559-8181으로 문의한다.

부칙

본 시방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 2018.09.04

2차 개정 : 2019.10.17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관리번호	
개 정 일	2018.07.01
개정차수	8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 품 명	퍼라이트 (파라셀, 파라트, 파라그린, 파인셀, 파라소)	제품번호(Code No.)	-
일 반 적 특 성		용 도	산업용
제 조 회 사	사업자명	(주)경동원 아산공장	유해성 분류
	공 급 회 사		사 업 자 명
	연 락 처	Tel.(041) 539-8181 우편번호: 31402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331	연 락 처
전 화 번 호 (긴급 상황시 연락처)	Tel. (041) 539-8181 FAX : (041) 543-8119		

2. 유해, 위험성

◆ 퍼라이트의 위험유해성

- 유해·위험성 분류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 자극)
- 예방조치분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경고
- 유해·위험문구
H335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P261	P271	P304+P340	P312	P403+P233	P405	P50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의 명 칭	CAS NO.	목록등재번호	함 유 량 (%)
퍼라이트	93763-70-3		100

4.응급조치 요령

피부에 접촉했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흙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증상이 지속되거나 의심이 나면 가능한 빨리 전문의의 치료나 진단을 받도록 한다.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료나 기타 어떠한 음식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5.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 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흙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량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엇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엇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육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십시오.

8.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착용방법
=국내규정 - TWA : 10mg/m ³ =ACGIH 규정 -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눈 보호 -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손 보호 - 자료없음
=운전시 먼지, 흙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십시오	=신체 보호 - 자료없음

9.물리, 화학적 특성

1) 외 관	성상(고체, 분말), 색상(흰색에서 회색) (※출처 : IPCS)
2) 냄새	무 취 (※출처 : NIOSH)
3) PH	5 ~ 9 (여액상태)
4) 냄새역치	자료없음.
5)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6) 녹는점/녹는점 범위	> 1093 °C (※출처 : IPCS)
7) 분해온도	자료없음.
8) 인화점(고체, 기체)	비가연성 (※출처 : IPCS)
9) 증발속도	자료없음.
10) 인화성	불연성 (※ 출처 : ICSC)
11) 비중 (25°C)	2.2 - 2.4 (물 = 1) (※ 출처 : ICSC)
12) 인화 또는 폭발범위 상하한	해당없음.
13) 증기압	해당없음.
14) 용해도	물 용해도 : 난용성 (※출처 : ICSC)
15)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16) 자연발화온도	불연성 (※출처 : ICSC)

10.안정성 및 반응성

-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 피해야 할 조건 : 열, 스파크 화염등 점화원
- ▣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부식성/독성 흡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독성에 관한 정보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유해성	독 성 치		
		경구 (LD ₅₀)	피부접촉 (LD ₅₀)	흡입 (LD ₅₀)
퍼라이트 (perlite)	급성독성	12960 mg/kg (실험종 : Mouse) ※출처 : ChemIDplus	자료없음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고시 - IARC - OSHA - ACGIH - NTP - EU CLP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흡인유해성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관한 정 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급성 독성노출 시험결과 눈과 피부, 목구멍,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 (※출처 : NIOSH)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어류,갑각류,조류)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 농축성 및 생분해성
 •토양이동성, 기타유해성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 없음
- 적정선적명 - 해당없음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 용기등급 - 해당없음
-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할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 유출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15.법적 규제 현황

- 펄라이트(PERLITE)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 설정 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CERCLA, EPCRA302, EPCRA304, EPCRA313, 로테르담협약물질, 스톡홀름협약 물질,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위험문구, 안전문구) - 해당없음

16.기타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ChemIDplus(경구)

ICSC(비중, 용해도, 인화성, 자연발화온도, 녹는점/어는점, 색상, 성상 인화점)

NIOSH(냄새,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주의 MSDS 작성비치”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현시점에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학 제품에 미지의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에 규정된 물질들은 존재하는 모든 위험유해물질이 기재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고객 및 잠재고객께서는 본 정보를 검토하시고, 주의사항을 신중히 살펴보셔야 하며, 본 제품 사용과 관련된 적용법과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MSDS는 오직 제품 취급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요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품의 특정한 성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통상의 취급을 전제로 한 자료로서 특수한 취급의 경우에는 용도, 용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 본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적(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됩니다.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소송 및 기타 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료를 제공받아 당사위 지식을 기초로 당사에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작성일 : 2005.01.01

작성자 성명

한 장 범

작성자 소속

CE품질관리팀

작 성 일

2018.07.01